

출입국관리법

[시행 2009. 6.20] [법률 제9140 호, 2008.12.19, 일부개정]

제4 장 외국인의 체류와 출국

제1 절 외국인의 체류

제17 조 (외국인의 체류 및 활동범위) ①외국인은 그 체류자격과 체류기간의 범위내에서 대한민국에 체류할 수 있다.

②대한민국에 체류하는 외국인은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치활동을 하여서는 아니된다. <개정 2005.3.24>

③법무부장관은 대한민국에 체류하는 외국인이 정치활동을 한 때에는 그 외국인에 대하여 서면으로 그 활동의 중지 기타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다.

제18 조 (외국인고용의 제한) ①외국인이 대한민국에서 취업하고자 할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받아야 한다.

②제1 항의 규정에 의한 체류자격을 가진 외국인은 지정된 근무처외에서 근무하여서는 아니된다.

③누구든지 제1 항의 규정에 의한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자를 고용하여서는 아니된다.

④누구든지 제1 항의 규정에 의한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자의 고용을 알선 또는 권유하여서는 아니된다.

⑤누구든지 제1 항의 규정에 의한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자의 고용을 알선할 목적으로 그를 자기 지배하에 두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.

제19 조 (외국인을 고용한 자등의 신고의무) ①제18 조제1 항의 규정에 의하여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고 있는 외국인을 고용한 자는 다음 각호의 1 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15 일 이내에 이를 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. <개정 1996.12.12, 2005.3.24>

1. 외국인을 해고하거나 외국인이 퇴직 또는 사망한 때

2. 고용된 외국인의 소재를 알 수 없게 된 때

3. 고용계약의 중요한 내용을 변경한 때

4. 고용된 외국인이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에 위반되는 행위를 한 것을 안 때

②제1 항의 규정은 외국인에게 산업기술을 연수시키는 업체의 장에 대하여 이를 준용한다. <신설 1996.12.12>

제19 조의2 (산업연수생의 보호등) ①정부는 제10 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연수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고 지정된 산업체에서 연수하고 있는 외국인(이하 "산업연수생"이라 한다)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.

②제1 항의 규정에 의한 산업체의 지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[본조신설 1997.12.13]

제19 조의3 (산업연수생의 관리등) ①법무부장관은 산업연수생의 연수장소 이탈, 연수목적외의 활동 기타 허가된 조건의 위반 여부등을 조사하여 그 외국인의 출국등 산업연수생의 관리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.

②제1 항의 규정에 의한 산업연수생의 관리 및 산업연수생의 입국과 관련된 모집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③법무부장관은 산업연수생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을 갖춘 자(이하 이 항에서 "연수취업자"라

한다)에 대하여 취업활동을 할 수 있도록 그 체류자격변경허가를 할 수 있다. 이 경우 연수취업자의 관리에 관하여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.

[본조신설 1997.12.13]

제19조의4 (외국인유학생의 관리 등) ①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유학 또는 연수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고 있는 외국인(이하 "외국인유학생"이라 한다)이 재학 또는 연수 중인 학교(「고등교육법」 제2조 각호의 규정에 의한 학교를 말한다. 이하 같다)의 장은 그 외국인유학생의 관리를 담당하는 직원을 지정하고 이를 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.

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학교의 장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15일 이내에 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.

1. 입학 또는 연수허가를 받은 외국인유학생이 매 학기 등록기한 이내에 등록을 하지 아니하거나 휴학을 한 때
2. 제적·연수중단 또는 행방불명 등의 사유로 외국인유학생의 유학 또는 연수가 종료된 때

③외국인유학생의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[본조신설 2005.3.24]

제20조 (체류자격외 활동) 대한민국에 체류하는 외국인이 그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활동과 병행하여 다른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활동을 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법무부장관의 체류자격외활동허가를 받아야 한다.

제21조 (근무처의 변경·추가) ①대한민국에 체류하는 외국인이 그 체류자격의 범위내에서 그의 근무처를 변경하거나 추가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법무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.

②누구든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근무처의 변경·추가허가를 받지 아니한 외국인을 고용하거나 고용을 알선하여서는 아니된다. 다만, 다른 법률에 의하여 고용을 알선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 <신설 1993.12.10>

제22조 (활동범위의 제한) 법무부장관은 공공의 안녕질서 또는 대한민국의 중요한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대한민국에 체류하는 외국인에 대하여 거소 또는 활동의 범위를 제한하거나 기타 필요한 준수사항을 정할 수 있다.

제23조 (체류자격부여) 대한민국의 국적을 잃거나 대한민국에서의 출생 기타 사유로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체류자격을 가지지 못하고 체류하게 되는 외국인은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체류자격을 받아야 한다.

제24조 (체류자격변경허가) ①대한민국에 체류하는 외국인이 그 체류자격과 다른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활동을 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법무부장관의 체류자격변경허가를 받아야 한다.

②제31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서 그 신분의 변경으로 인하여 그의 체류자격을 변경하고자 하는 자는 그 신분변경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법무부장관의 체류자격변경허가를 받아야 한다.

제25조 (체류기간연장허가) 외국인이 체류기간을 초과하여 계속 체류하고자 할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기간의 만료전에 법무부장관의 체류기간연장허가를 받아야 한다. <개정 1996.12.12>

제26조 삭제 <1996.12.12>

제 27 조 (여권등의 휴대 및 제시) ①대한민국에 체류하는 외국인은 항상 여권·선원신분증명서·외국인입국허가서·외국인등록증 또는 상륙허가서(이하 "여권등"이라 한다)를 지니고 있어야 한다. 다만, 17 세미만인 외국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 <개정 2005.3.24>

②제 1 항 본문의 외국인은 출입국관리공무원 또는 권한있는 공무원이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여권등의 제시를 요구한 때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.

제 2 절 외국인의 출국

제 28 조 (출국심사) ①외국인이 출국하고자 할 때에는 유효한 여권을 가지고 출국하는 출입국항에서 출입국관리공무원의 출국심사를 받아야 한다. <개정 1996.12.12, 2005.3.24>

②제 3 조제 1 항 단서의 규정은 제 1 항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.

③제 5 조제 2 항의 규정은 제 1 항 및 제 2 항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. <개정 1996.12.12>

④제 12 조제 6 항의 규정은 제 1 항 및 제 2 항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. <신설 1996.12.12>

제 29 조 (외국인출국의 정지) ①법무부장관은 제 4 조제 1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외국인에 대하여는 그 출국을 정지할 수 있다. <개정 2007.12.21>

②제 1 항의 경우에 제 4 조제 2 항부터 제 4 항까지와 제 4 조의 2 부터 제 4 조의 5 까지를 준용한다. <신설 2007.12.21>

[전문개정 2001.12.29]

제 30 조 (재입국허가) ①법무부장관은 제 31 조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인등록을 하거나 그 등록이 면제된 외국인이 그의 체류기간내에 출국하였다가 재입국하고자 하는 경우 그의 신청에 의하여 재입국을 허가할 수 있다. 다만, 제 10 조제 1 항의 규정에 의한 외국인의 체류자격중 대한민국에 영주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진 자에 대하여는 재입국허가를 면제할 수 있다. <개정 2001.12.29, 2002.12.5>

②제 1 항의 규정에 의한 재입국허가는 1 회에 한하여 재입국할 수 있는 단수재입국허가와 2 회이상 재입국할 수 있는 복수재입국허가로 구분한다.

③외국인이 질병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제 1 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받은 기간내에 재입국할 수 없는 때에는 그 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법무부장관의 재입국허가기간연장허가를 받아야 한다.

④법무부장관은 재입국허가기간연장허가에 관한 권한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재외공관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.

⑤재입국허가 및 그 기간 연장허가와 재입국허가의 면제에 관한 기준과 절차는 법무부령으로 정한다. <개정 2002.12.5>